

□ 정부시책 □

산업기술 개발자금 지원규모 확정

통상산업부는 올해 산업기술개발용자사업의 자금지원 규모를 총 2,827억원으로 확정하고 자본재 시제품 개발에 2,220억원, 첨단기술제품 개발에 60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금년도 산업기술개발용자사업은 최근 IMF 한파로 인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자금신청 기회를 확대했다.

지원조건은 시중실세금리 상승 영향으로 정부의 재특 조달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작년보다 2% 포인트 오른 8%로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간 소요자금의 80%, 과제당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IMF 극복을 위해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출주도 품목을 집중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무역역조 과다 품목, 수출가능성이 큰 품목, 수입증가 예상 품목 및 제품혁신 또는 공정혁신을 통한 고성능·다기능품목 등의 신기술제품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통산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

한 기술개발용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산업기반기금에만 시범실시해 온 기술담보제를 올해부터 산업기술개발용자사업에도 확대적용하고 2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특허권·실용신안권·컴퓨터소프트웨어권 등 지적재산권 보유 중소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통산부는 올해부터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의 자금신청 기회를 연 2회로 늘려 상반기에는 통상산업부에서 발굴 고시한 400여개 품목의 핵심 전략자본재 위주로, 하반기에는 고시품목 이외에 신규 기술개발 수요 과제를 자유 응모 형식으로 발굴 지원키로 했다.

자금지원 신청은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의 경우 전기공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등 7개 기관에서,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은 산업기술정책연구소와 전자산업진흥회에서 신청을 받으며 세부 시행계획은 별도 공고키로 했다.

한편 통산부는 '95년 하반기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전략 자본재의 국산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어 이의 개발이 완료되는 2-3년 후 부터는 자본재의 무역역조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 정책방안

대체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에 대응하는 가장 적합한 비 고갈성 에너지원일 뿐 아니라 기후변화협약 및 산성비(SOX, NOX 등) 문제 해결에 하나의 대응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88년부터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하여 태양열, 폐기물에너지, 태양광발전 등의 분야에 '97년말까지 1,190억원(정부 645억원)을 투자하고 개발된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83년부터 '97년까지 1,612억원의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대체에너지 상당부분이 실용화 또는 상업화 단계에 도달하였다.

기술개발의 주요 효과로는 일반가정에 태양열온수기 보급(약 130,000여기), 산업체에 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 설치(410여개소), 식품공장 등에 산업폐기물 메탄가스 이용시설을 보급(8개소) 하고, 충남 호도에 100kW급, 전남 하화도에 60kW급 태양광 발전시설과 제주도 마라도에 50kW급 풍력발전기를 시범설치하였다.

대체에너지 보급은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성 향상, 국제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관심 증대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96년 기준 총 소요

에너지의 0.7%가 보급되었다.

최근 5년간 대체에너지 증가율은 연평균 23% 수준으로 총 에너지소비 증가율의 2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 보급은 최근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약 5만대의 태양열 온수기가 공급되었는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공급되었던 물량의 1.3배에 해당된다.('98 : 6만대 보급 추정)

정부는 2006년까지 총 에너지의 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할 목표로 태양열, 태양광, 폐기물에너지이용,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 단기간내 실용화 가능성이 큰 분야를 계속 중점 지원하여, 향후 10년간 5,270억원(민간투자 포함)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술개발 위주에서 이용·보급을 촉진코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97. 12. 13 공포, '98. 6. 14 시행)하여,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상산업부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작성중에 있으며, 개정안이 작성되는 대로 입법예고하고,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

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경제장관회의의 심의 등 개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WTO 상품무역이사회, 제2단계 정보기술협정(ITA-II)추진

지난해 7. 1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 등 43개국이 참여하여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등 정보기술제품 20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00. 1. 1까지 4단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합의, 시행중에 있는 정보기술협정의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추가협상이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8. 2.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정보기술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추가협상 방식 및 일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정보기술협정의 추가품목 검토를 위한 ITA-II 협상을 '98년 상반기중 완료하여 '99년 1월부터는 제2단계 정보기술협정(ITA-II)을 시행키로 결정하고 지난해 말까지 정보기술협정 참여국들로 하여금 추가품목 희망리스트를 제출토록 한 바 있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미국(75), EU(60), 일본(46) 등 13개 국가가 약 400여개 품목을 추

가대상품목으로 제출하였으며 동 품목중에는 기왕의 통신기기, 컴퓨터 등 7개 분야는 물론 광학기기, 영상기기, 산업기계 등까지 대폭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EU, 일본 등 3개국은 ITA-I에 포함되지 않았던 총 130여개의 PCB 및 축전기 제조장비를 추가 제안했다.

통상산업부는 현재 우리 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정보통신제품”의 엄밀한 개념 정립의 선행 등을 통해 가급적 무관세 대상품목의 추가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협상 대응전략을 수립,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철폐 가속화 및 비관세장벽 제거 등 논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 개정

을부터 단체수의계약에서 조합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업체에 대한 물량배정이 제한되는 등 경쟁요소가 강화된다.

대신 수출실적이 높은 업체나 벤처기업, 여성경제인 기업 등에 대한 우대조항이 신설되고 기술·품질수준이 높은 업체에 대한 배점기준도 더 높아진다.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을 이 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합이사장 등 임원이 운영하는 기업이 당해연도에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물량에 당해 기업이 전년도에 배정받은 비율을 곱한 양'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1개 업체 또는 동일 업체에 대한 연간 배정비율을 30%에서 25%로 축소하고 상위 3개사 또는 상위 20% 업체에 대한 배정비율도 65%에서 60%로 낮춰 다수의 중소기업자에게 물량배정의 기회를 확대했다.

대기업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인 중소기업에 대한 배정비율은 15% 이내에서 12% 이내로 줄였고 비조합원인 대기업의 경우는 물량 배정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반면 조합원간 단체수의계약 물량 배정량을 결정하는 기준 가운데 수출업체에 대한 배점

항목을 신설(7~11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우대했다.

이와 함께 여성경제인에 대한 배점을 5점 이내에서 추가하도록 신설했다.

기술 및 품질수준에 대한 배점기준도 상향 조정됐는데 신기술개발 항목은 기존의 20~26점에서 22~28점으로, 품질수준은 45~55점에서 47~57점으로 높였다.

이 가운데 신기술개발 항목의 범위에 벤처 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품질수준 항목에는 NT(신기술), GR(우수재활용) 마크 획득 업체 등이 추가됐다.

이번 운용규칙 개정에서는 단체수의계약 물품 추천요건도 강화됐는데 동일품목 생산 업체수는 8인(기존 7인)으로, 연간 최저계약 실적은 전국조합 4억원 미만(기존 3억원 미만), 지방조합 4천만원 미만(기존 3천만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이밖에 조합내에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 조정심의회를 설치, 물량 배정에서 조합원간 다툼이 있을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기청장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조합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